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

주체 87(1998)년 12 월 18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87 호로 채택
주체 105(2016)년 2 월 24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979 호로 수정보충
주체 109(2020)년 5 월 20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5 호로 수정보충
주체 113(2024)년 6 월 11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660 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제 1 조 (주민연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은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 판매에서 제도와 질 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연료사업을 개선하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주민연료의 정의)

주민연료는 주민생활보장에 쓰이는 연료이다.

주민연료에는 석탄, 석유, 가스, 땔나무 등과 그 대용연료가 속한다.

제 3 조 (주민연료의 확보원칙)

주민 연료를 충분히 확보하는것은 주민연료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주민연료의 공급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켜나가도록 한다.

제 4 조 (주민연료수송원칙)

주민 연료의 수송은 주민연료사업 의 중요공정 이 다.

국가는 주민연료수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확보된 주민연료를 제때에 수송하도록 한다.

제 5 조 (주민연료공급원칙)

국가는 주민연료공급대상과 기준을 바로정하고 주민연료를 제때에 골고루 공급하도록 한다.

제 6 조 (주민연료의 생산, 공급계획화원칙)

국가는 주민연료의 생산, 공급계획을 수요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어김 없이 실행 하도록 한다.

제 7 조 (주민연료절약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민연료를 아껴쓰도록 한다.

제 8 조 (주민연료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원칙)

국가는 주민연료봉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9 조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주민연료지도 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와 수송, 공급, 판매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연소효율과 대용연료의 연구개발)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의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대용연료를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 개발된 기술과 대용연료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 11 조 (전력을 리용한 난방, 취사)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력, 태양열, 지 열,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리용하는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주민 세대의 난방, 취사 같은것을 전력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며 도시와 농촌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오물, 농부산물, 집짐승배설물 같은것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주민연료로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제 12 조 (주민연료사업의 성과와 경험소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 기관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사업에

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 선전하여야 한다.

제 13 조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 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 판매, 보관, 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민연료의 확보

제 14 조 (주민연료확보의 기본요구)

주민연료의 확보는 주민연료원천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주민연료를 계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 (주민연료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교통운수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와 수송, 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공급부문에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사업에 종사하는 로력을 타사업에 동원시키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 16 조 (주민연료생산계획의 작성 및 실행)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주민연료생산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주민연료기업소의 조직)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을 위하여 해당 법 규에 따라 주민연료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 18 조 (탄광에서 주민용석탄보장임무)

국가계획기관과 석탄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용석탄을 보장하는 탄광을 바로 정하고 주민용석탄보장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해당 탄광은 계획된 주민용석탄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 19 조 (주민연료보장을 위한 중소탄광개발)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보장을 위한 중소탄광을 내오고 주민용석탄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매 장량이 부족한 중소탄광은 모체탄광의 현행 및 전망채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확장 또는 위치변경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보장을 위한 중소탄광개발 또는 확장, 위치변경과 관련한 토지리용허가, 자원개발승인 등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20 조 (주문계약에 의한 주민용석탄확보)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로 공급할 석탄이 부족되는 경우 해당 탄광과 주문계약의 방법으로 주민용석탄을 확보할수 있다.

제 21 조 (초무연탄, 니탄, 저열탄, 버력선별탄, 연재의 확보)

지방인민위원회는 초무연탄, 니탄, 저열탄, 버력선별탄, 연재를 주민연료로 확보하고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력발전소와 석탄을 연료로 하는 공장, 기업소에서 나오는 연재를 주민연료로 리용할수 있게 계획화하여 주민연료기업소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 22 조 (석유, 가스의 확보)

국가계획기관과 화학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용석유, 가스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기업소는 주민연료보장을 위하여 석유, 가스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고 구입할 수 있다.

제 23 조 (떨 나무의 확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떨나무림 지를 바로정하고 상원뽕뿌라나무를 비롯한 빨리 자라면서도 떨감에 좋은 나무종자를 심어 떨나무림을 적극 조성하며 그 보호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떨나무림의 조성과 보호를 위하여 주민세대당책 임제, 기관, 기업소담당책 임제를 실시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림업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나무채벌과정에 나오는 초두, 아지를 전량 회수하여 주민연료로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주민연료의 수공급계약)

주민연료기업소는 계획에 기초하여 석탄, 석유, 가스를 비롯한 연료생산기관, 기업소와 수공급계약을 맺고 주민연료를 정확히 넘겨 주거나 넘겨 받아야 한다.

제 3 장 주민연료의 수송

제 25 조 (주민연료수송의 기본요구)

주민연료를 제때에 수송하는 것은 주민연료의 공급을 원만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교통운수기관,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수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주민연료를 계획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민연료수송계약의 체결 및 리행)

주민연료기업소는 주민연료수송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교통운수기관과 주민연료수송계약을 맺고 주민연료를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민연료의 수송조직)

주민연료는 기차, 자동차, 배로 수송한다.

해 당 교통운수기관은 주민연료수송을 위한 운수수단보장과 수송조직사업 을 책 임 적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화물역에 주민 연료를 하차할수 있는 조건 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민연료의 수송조건보장)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 수송용륜전기재 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주민용석탄집중수송월간에 주민용 연료수송에 동원되는 륜전기재들의 운행보장을 위한 통행증과 해당 문건을 제때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 29 조 (주민연료수송용연유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주민연료수송에 필요한 연유 를 계획화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민용석 탄집중수송월간)

국가계획기관과 교통운수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5 월— 7 월과 9 월— 11 월을 주민용석탄집중 수송월간으로 정 하고 이 기 간에 주민용석탄을 집 중적 으로 수송하여 주민연료보장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주민연료의 인계인수)

교통운수기관은 수송한 주민연료를 주민연료기업소에 정확히 넘겨주어 야 한다.

수송도중 주민연료의 손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운수기관이 그에 대하 여 책임진다.

제 4 장 주민연료의 공급, 판매

제 32 조 (주민연료공급, 판매의 기본요구)

주민연료공급, 판매를 잘하는것은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주민 연료공 급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3 3 조 (주민연료공급기관)

주민연료공급은 그 대상에 따라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가 한다.

주민세대와 지방인민위원회에 등록된 비생산기관, 기 업소, 단체에 대한 주민 연료의 공급 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따로 정한 대상에 대한 주민연료의 공급은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가 한다.

제 3 4 조 (주민연료공급정 형 의 등록)

주민연료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주민연료공급대장을 갖추고 공급 정형을 세 대별, 단위별로 정상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수, 종업원수, 살림집 또는 건물 형식, 난방조건, 방수, 사용할 연료의 종류 등을 정확히 밝힌다.

제 3 5 조 (주민연료공급등록신청문건의 제출)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주민연료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연료공급 등록신청문 건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내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6 조 (주민연료의 공급기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은 주민연료공급기준을 바로정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를 정해진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 다.

제 3 7 조 (주민연료의 공급방식)

주민세대에는 주민연료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공급하거나 집중적으로 공급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주민연료를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제 3 8 조 (구멍 탄, 착화탄, 연소점 가제 생산 및 공급, 판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멍탄공장과 석탄연소첨가제 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주민들과 수요자단위들에 구멍탄, 착화탄, 알탄, 성형봉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연료와 연소첨가제를 생산하여 공급,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9 조 (상점을 통한 주민연료보장)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보장을 위한 상점을 필요한 지역마다 내고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40 조 (주민연료공급소의 배치)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공급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주민연료공급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제 41 조 (주민연료의 판매 봉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를 자체로 판매하려 할 경우 정해진데 따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의 합의와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주민 연료지도기관은 합의신청 문건을 접수받은 때 부터 7 로동일 안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신청단위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 42 조 (영업허가신청)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시 (구역) , 군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문건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열내압설비 검사증, 가스 취급승인 문건, 봉사시설위치, 조직근거 같은 해당 기관의 합의 및 승인문건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 (구역) , 군인민위원회는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 로동일안으로 검토하고도 (직 할시) 인민위원회 에 보내 주어야 한다.

제 43 조 (영업허가신청문건의 심의)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받은 날부터 7 로동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영업허가신청의 처리정형을 중앙주민연료 지도기관에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4 조 (주민연료의 생산, 수입, 판매정형통지)

주민연료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분기 1 차 중앙주민연료 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법적책임

제 4 5 조 (민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 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 4 6 조 (변상처벌)

주민용연료를 각종 명목으로 비법처리하였거나 연료의 보관관리질서를 바로 지키지 않아 연료를 분실, 루실, 류실, 파손, 소각시켰을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제 4 7 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1. 주민연료를 정해진 기준대로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30 만~150 만 원, 공민에게는 2 만~10 만 원
2. 주민연료보장을 위한 상점에서 승인되지 않은 지표의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 만 원, 공민에게는 10 만 원

3.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료를 판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거래금액의 2 배

4. 주민연료를 각종 명목으로 비법처리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거래 금액의 2 배

제 48 조 (중지 처 벌)

이 법 제 47 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 49 조 (몰수처 벌)

비법적으로 연료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된 연료와 자금을 몰수한다.

제 50 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1. 주민용석 탄집 중수송월간에 주민연료수송용륜전기재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2. 땔나무림지를 정하는 사업, 주민세대당책임제, 기관, 기업소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 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땔나무림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주민연료수송용륜전기재와 주민용석 탄집중수송월간에 주민 연료수송에 동원된 륜전기재의 운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주민연료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제 51 조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 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주민연료의 생산, 공급계획작성과 그 실행을 바로하지 않아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주민연료보장탄광에서 주민용석 탄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지 않아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주민용석유, 가스를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지 않아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주민연료를 판매하였을 경우
5. 주민연료보장을 위한 상점, 구멍탄공장운동을 바로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주민연료공급부문에 사회적과제를 시달하여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사회적과제수행을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주민용연료를 비법처분하였을 경우
8.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사업에 종사하는 로력을 타사업에 동원시켜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처벌을 준다.

제 5 2 조 (강직, 해임, 철직처벌)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

제 5 3 조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 적 책임을 지운다.

제 6 장 부 칙

제 5 4 조 (시행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660 호 [주체 113(2024)년 6 월 11 일] 로 수정보충한 주민연료법은 주체 113(2024)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